

보도시점 2023. 5. 14.(일) 12:00 (2023. 5. 15.(월) 조간)

고용노동부,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100일간 973건 접수, 697건 처리

- 산업현장 노사법치주의 확립
- 육아휴직 등 보장을 위한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도 오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26.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5.5.)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민원-신고센터-「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되었다. ☞ [붙임1] 주요 신고·처리 사례 참조

* [집단노사관계 관련 신고] 횡령 등 노조 재정 부정 사용, 조합원 폭행·협박·괴롭힘,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회계감사 미 실시·감사결과 미공개, 노조 회계자료 미비치·미공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등

[개별근로관계 관련 신고]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52시간 초과근로 위반, 연차 휴가 사용 강요, 산업안전 미조치, 4대 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위반,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

접수된 신고된 사건은 5.5. 현재 697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 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및 근절대책 마련, 「공정채용법」 개정 지원, 불공정채용 집중점검 및 사업장 감독 등에도 정책역량 집중

한편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토록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노동포털(labor.moel.go.kr)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서 신청

담당 부서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	책임자	과 장	조충현 (044-202-7692)
		담당자	사무관	김동권 (044-202-7836)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수경 (044-202-7470)
		담당자	주무관	임동훈 (044-202-7472)



1 노동조합 불법행위

- ✓ **(위법한 규약 시정명령)** 산별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지회 단위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약 변경
 - ☞ 관할 노동관서는 규약의 위법한 조항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 판정회의 개최 예정
- ✓ **(조합원 제명)** 노동조합 지부장의 5억원 상당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해 조합원 제명
 - ☞ 관할 노동관서는 조합원 제명처분이 노동조합 규약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 요청
- ✓ **(조합비 유용)** 코로나로 인해 외부 행사나 쟁의행위가 없었음에도 쟁의기금·직책 수행비·판공비·접대비 등 6천여만 원의 조합비 유용 의혹 제기
 - ☞ 형법 등 위반행위 소관 기관(경찰) 이송
- ✓ **(노조발전기금 요구)** 지역 업체들이 산별노조 지부와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여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매월 70여 만원을 노조 지부 통장에 지급
 - ☞ 관할 노동관서는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 조사중
- ✓ **(시정명령 불이행)** 조합원이 회의록과 조합비 사용내역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관할 자치단체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에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이행
 - ☞ 관할 노동관서는 노동조합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조사한 후 사법처리 예정
- ✓ **(재정서류 열람 거부)** 노조 집행부가 사용한 쟁의기금, 식권 결제금, 대의원대회 찬조금 등의 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이 거부
 - ☞ 관할 노동관서의 개선지도로 노동조합이 신고인에게 열람 조치
- ✓ **(부정채용 청탁)** 노조 위원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을 소속 회사의 용역 업체에 입사시킨 후 2년이 지나 소속 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부정 청탁
 - ☞ 관할 노동관서는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중
- ✓ **(휴먼노조 직권해산)** 회사 대표가 친인척 등을 노동조합위원장 내지 간부로 내세운 후 총회를 개최하거나, 조합비를 납부한 실적이 없음
 - ☞ 관할 자치단체는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하지 않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 미개최 등 노동조합 활동이 없어 지방노동위원회에 직권해산 의결 요청

2 사용자 불법행위

- ✓ **(사용자 지배 개입)**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노조 간부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노조 간부용으로 차량을 제공하고 유류비를 지원,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비를 노조에 지원(A사)
회사는 노사합의서 없이 노조에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지급하고, 노조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조합원들에게 지급(B사)
☞ 관할 노동관서는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 조사 중
- ✓ **(포괄임금 오남용)** 주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에도 1일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 관할노동지청은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80여 명의 연장근로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액 5천여만 원을 확인하고 시정지시
- ✓ **(부정 채용)** 노조 간부의 가족 또는 친인척을 청탁 등을 통해 부정 채용
☞ 관할 노동관서는 부정채용 관련자 대상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
- ✓ **(퇴직금 체불)** 학원 시간강사로 1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후임강사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
☞ 관할노동지청은 사업주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 ✓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연 2,000시간임에도, 위원장과 사무국장 2명에게 연 3,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
☞ 관할 노동관서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노사에게 시정 기간 부여, 미시정시 사법 처리할 예정
- ✓ **(연장근로시간 한도위반)**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고용노동부 현장점검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해당 근로자들을 회유
☞ 관할 노동관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조사 중
-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음
☞ 관할 노동관서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 ✓ **(산업안전 미조치)** 건설현장 발판작업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5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에도 사용자는 통원 치료를 요구하며 산업재해 요양 신청 거부
☞ 관할 노동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중
- ✓ **(임금·해고예고수당 체불)** 식당에서 서빙 종사자로 일한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3년간 다녔던 회사를 아무런 이유나 예고 없이 해고됨
☞ 관할 노동관서의 지도로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전액 청산
- ✓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조합장이 팀장·상무 등 직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여 다수 직원들이 견디지 못해 퇴사하였고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도 있음
☞ 관할 노동관서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조사 중

□ **목 적**

-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현장의 불법·부당한 노사관행을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개설
- 폭력 등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노조의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현장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신고·처리

□ **개 요**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내용 입력

*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신고센터 →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 첫 화면 롤링 배너를 클릭하면 신고센터로 바로 이동 가능)

- (운영 기간) '23. 1. 26.(목)부터 상시 운영

- (신고 내용) 노동조합 운영 및 회계투명성, 노조 활동 방해행위, 사용자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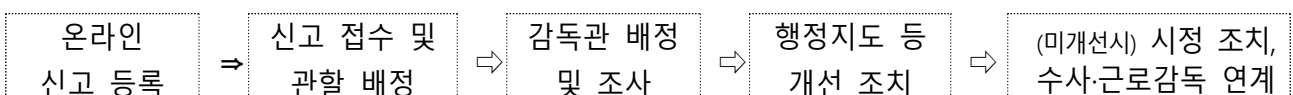
- 노동조합 또는 사업장 정보(명칭, 주소 등), 신고내용, 신고인 정보* 등

* 신고인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 익명 신고 가능

【 신고대상 부조리 행위 】

- ❖ (노조 운영·회계투명성) ▲서류비치 의무 및 조합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재정 부정사용 등에 관한 사항
- ❖ (노사 불법·부당행위) ▲노조 가입·탈퇴 등 방해, ▲노동조합 활동 과정상 폭행·협박 등 행위, ▲기타 노동관계법상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 현장 불법행위 중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용자의 부당행위는 기존의 관련 신고센터에 곧바로 간편하게 연결 조치
- ❖ (포괄임금) ▲포괄임금·고정 OT 계약 관련 오남용에 관한 사항

- (처리 절차) ① 신고 → ② 접수 및 관할배정 → ③ 감독관 배정·조사 → ④ 행정지도 등 개선조치 → ⑤ (미개선시) 시정조치, 수사·근로감독 실시



붙임 3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개요

□ 목 적

-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출산 휴가·육아휴직 미부여, 불리한 처우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온라인 신고센터 마련

□ 개 요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포털 내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내용 입력

*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labor.moel.go.kr) → 민원 → 신고센터 →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누리집 첫 화면 롤링 배너를 클릭하면 신고센터로 바로 이동 가능)

- (운영 기간) '23. 5. 15.(월)부터 상시 운영

- (신고 내용)

- 사업장 정보(명칭, 주소 등), 신고내용, 신고인 정보* 등

* 익명 신고 가능

【 신고대상 모성보호제도 위반 행위 】

- ❖ (승인거부/불리한 처우)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하지 못한 사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례, ▲소속 회사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승인을 거부한 사례
- ❖ (기타)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급여 관계 서류 작성 등에 적극 협력하지 아니한 사례, ▲사업주가 육아휴직 시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강요하는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 등

- (처리 절차) ① 신고 → ② 접수 및 관할배정 → ③ 감독관 배정·조사 → ④ 행정지도 등 개선조치 → ⑤ (미개선시) 사건접수 또는 근로감독

